

전라남도 개방형직위 「도민행복소통실장」 공개모집 공고

전라남도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「도민행복소통실장」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2년 6월 28일

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 임용예정 직위(직급) 및 인원

임용직위	임용직급	선발인원	근무기간	근무처
도민행복소통실장	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일반임기제 4호	1명	2년	전라남도
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.

2 주요 직무내용

- 도민 소통관련 정책 수립 및 도민 소통 네트워크 구축·관리
- 민원(고충, 탄원, 진정, 건의 등) 처리, 사회·봉사단체 지원 관리 등

3 근거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 4(개방형직위)
-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
-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

4 임용신분

- 민간인의 경우에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, 임용기간 동안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
-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(임기제공무원 제외)으로서 전보·승진·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

5

응시자격 요건(적용 기준일: 면접시험 예정일)

가. 공통요건(필수요건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거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○ 주소지·성별, 연령 : 제한 없음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)

※ 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
나. 자격요건 :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

구 분		자 격 요 건
경력 요건	학력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석사학위 이하인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○ 박사학위 소지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
	자격증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'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'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자 ※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 (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 및 별표5의2)을 의미함
	경력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무원경력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-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○ 민간경력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실적요건		○ 별도의 실적요건 없음

※ 관련분야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산하기관, 기업, 민간단체에서 등에서 대외 소통·협력, 대민 지원관리, 자원봉사, 소통·관리 분야에서 근무·연구 경력

6

보수수준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책정되며, 구체적인 금액은 능력·자격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

임용예정 분야	임용직급	상한액	하한액
도민행복소통실장	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일반임기제 4호	-	63,430천원

-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름
 - 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 (개방형직위 보전수당 등)
 - ※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7

시험방법 및 일정·장소

가. 시험방법

- 1차 시험(서류전형) : 자격·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
 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결정
 - 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2차 시험(서류심사+면접시험) :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
 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능력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
 - 전문가적 능력, 전략적 리더십, 변화관리능력, 조직관리능력,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

나. 시험일정 및 장소

응시원서 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(예정)	면접시험(예정)	최종 합격자 발표	임용 예정시기
'22. 7. 11.(월) ~ 7. 15.(금) < 공휴일 제외 5일간 >	'22. 7. 20.(수) ※ 전라남도 홈페이지	'22. 7. 28.(목) ※ 전남도청	'22. 8월 중 ※ 개별통보	'22. 8월 중

- ※ 구체적인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: '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'에서 확인
- ※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(<http://namdo.jeonnam.go.kr/sihum/>)에 공고
- 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 공고 및 개별 통보

8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'22. 7. 11.(월) ~ 7. 15.(금) / 5일간
- 접수처 : 전남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(8층)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 - ※ 코로나-19 예방을 위해 도청 출입이 제한되오니 **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제출**하시기 바랍니다.
 - 우편 접수는 **접수마감일 소인분**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
 - ※ 주 소: ☎58564)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
 - 우편 접수자의 경우,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, '응시표'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 - 우편접수 시, 응시수수료(우체국 통상환증서)는 제출서류와 동봉
 - ※ 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 불가,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에 유의

9 제출서류

- ① **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**(별지 제1호 서식) 1부
- ② **서류전형 자격요건 서식(본인의견서)** (별지 제2호 서식) 1부
- ③ **응시원서**(별지 제3호 서식) 1부
 -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(3×4cm) 사진 1매 별도 제출
 - 응시수수료 : 10,000원
 - ※ 응시수수료는 전라남도 수입증지(전남도청 1층 농협에서 판매), 우편 접수 시는 우편통상환(우체국에서 판매)으로 대체(**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**)

④ **이력서**(별지 제4호 서식) 1부

-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

⑤ **자기소개서**(별지 제5호 서식) 1부

⑥ **직무수행계획서**(별지 제6호 서식) 1부

⑦ **최종 학력증명서** 1부(박사·석사·학사)

- 박사 학위의 경우, 석·학사 학위 학력증명서도 함께 제출
- 석사 학위의 경우,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도 함께 제출

⑧ **경력(재직)증명서** 1부(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)

- 경력(재직)증명서는 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책,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,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(날인),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

- 제출된 경력(재직)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(재직)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

※ 경력(재직)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 할 경우 “**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 제7호 서식)**” 추가 제출

-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(週)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(프리랜서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 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)

⑨ **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** 각 1부

▶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“보험가입 전체기간”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

① **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(필수)**

-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종

② **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**

-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국세청의 ‘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’ 추가 제출

- ⑩ 주민등록초본 1부(병역사항 포함 발행)
- ⑪ 자격(면허)증·어학능력시험 증명서, 수상실적 등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⑫ 학위·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 증빙서류(별지 제8호 서식)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제9호 서식) 1부

《응시자 유의사항》

- ①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②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③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(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)을 인정하며,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)내의 서류여야 함
- ④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- ⑤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,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⑥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10 기타사항

-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이 응시할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을 경우,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응시자만 있을 경우,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며,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공고(7일) 합니다.

- 2차 시험(면접시험)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다시 공고합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여도 추가 합격자는 결정하지 않습니다.
-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.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▶ 채용절차 관련 문의 : 전남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(☎ 061-286-3372)
 - ▶ 직무내용 관련 문의 :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(☎ 061-286-2311)